

〈특집Ⅱ : 축산업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 양계업계 입장

환경규제는 오히려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불러온다.



김 동 진
대한양계협회 홍보부장,
월간양계 편집장

1. 축산업 발목 잡는 축산업 환경 규제

국내 축산업은 1970년대 이후 부업형태에서 전업형태로 발전하면서 40여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현재 축산물은 생산 규모가 18조원에 이르러 전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산업까지 합하면 무려 60조 규모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축산업은 국민들에게 단백질 등을 공급하면서 식량으로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는 축산이 마치 혐오산업인양 각종 규제로 일관하면서 축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로 하여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만들어 축산인들의 손발을 묶어오더니

지난 5월에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이란 정책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축산업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효자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을 만들어 축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FTA시대를 맞아 축산인들은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힘이 되어 주기는 커녕 발목잡기에 급급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은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강화하고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 과정



을 관리함은 물론 2020년까지 공공처리시설 처리율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년부터 금지되고 가축의 밀집사육 및 각종 질병의 발생으로 환경여건은 점점 악화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건전하게 발전해가는 축산업 전반적으로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계사들이 건축되고 있으며, 계분 처리 기술도 점점 좋아짐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된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축산물의 소비량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닭고기와 계란만 하더라도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닭고기는 1년에 1인당 11kg, 계란은 1인당 230개를 소비할 정도로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

닭고기와 계란은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짜면서도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축산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축산물의 가격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악순환으로 우

리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EU FTA와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수입산물이 국내시장을 위협하는 시점에서 외국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축산업 규제에 따른 가격상승은 더욱더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FTA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사현대화시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농가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사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일부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환경정책으로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양계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등 양계업을 영위하는 상당수 지역에서는 기존 농가의 시설 확대 등이 제약을 받을 것이고 신규농가 진입은 더욱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는 만큼 그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3.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급

2011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 무허가 축사비율은 30.4%로 나타났다. 농가 표본조사 결과 오리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양계업만 하더라도 무허가 계사 비율이 육계 41.6%, 산란계 30.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타 축종의 경우 젓소는 42.6%, 한육우는 25.6%, 돼지는 15.9%를 보여주었다. 특히 육계농가의 경우 비닐하우스 계사 사육형태가 많으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할 경우 많은 양계농가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되며, 사육중지에 따른 양계산물 수급에 심각한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는 양계 뿐만아닌 범축산업계의 숙원사업이다. 무허가 축사의 75.7%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양성화 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규제보다 절실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뇨처리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조치가 전적으로 선행된 후 분뇨처리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축산업 허가제를 중심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이미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였는가 하면 표

준 권고안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500m로 권고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조례를 더욱 강화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방조례권고안을 더욱 강화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지역에서 1km로 확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 축산농가의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거리제한을 두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금의 경우 전파가 빠른 제1종 법정전염병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농장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오리과 닭들은 엄연히 사육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질병전파를 우려해 종계장(PS)과 실용계 농장(CC)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양계인들은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농장이 들어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러한 부분은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축산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환경부의 지자체 조례 등에 맡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인 것이다.

5. 계분은 자원이다

양계업에 있어서 계분처리는 현재 자체



계분을 발효, 건조시켜 퇴비화 하는 경우와 인근의 계분비료공장으로 계분을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농가가 계분을 인근의 계분처리 공장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콤포스트나 발효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농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계분처리시설을 위한 기계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 시설을 하기란 무척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계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계분처리 시설을 적재적소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지 농가에 계분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정책적인 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환경규제는 가축분뇨와 축산시설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축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인데 가축분뇨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며 축산시설도 축산인 스스로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을 펼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축산분뇨는 자원이다. 계분만 하더라도 이제는 자체 계분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자원화하는 농장이 늘고 있으며, 주변에 계분비료공장을 통해 계분원료를 납품하여 양질의 계분비료를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과거 노천에 계분을 말리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난지 오래

다. 단지 선입견으로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국민들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따라서 정부도 축산업에 대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축산을 육성해 국민들의 식량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에 도래할 식량자원화 전쟁에도 대비하는 긴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만약 환경부의 추진계획 대로 사육제한을 요구해야 한다면 축사이전 명령이나 폐업을 명령해야 하는데 1년의 유예기간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이며, 최소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부작용과 충격을 완화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확보, 폐업보상비 등 정당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계사 외부 전경



▲ 계사 내부 광경